

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141 |
|----------|------|

2017년 11월 29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0. 16. 서울특별시상 제출
2. 회부일자 : 2017. 10. 18.
3. 상정일자 : 제277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7년 11월 29일 상정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나백주 시민건강국장)

- 가.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및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치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, 그동안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되고, 위·수탁 협약기간이 만료('18.4.17)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
- 나. 치과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○ 추진 필요성

- 장애인 구강지료를 통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
- 전문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진료연계와 병원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능강화
-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,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
- 병원 및 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치과진료
-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
-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
- 시설규모 : 대지 836.6㎡, 건물 1,606.62㎡(지하1층, 지상4층)
- 지원시설 : 장애인 구강진료
- 개원일자 : 2005년 9월

마. 민간위탁기간

- 2018년 4월 18일 ~ 2021년 4월 17일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

- 소요예산 : 총 2,514,246천원('18년 예산편성중)

라. 추진근거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(정신재활 시설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마. 필요성

- 아동·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정신건강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적

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

-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장애인복지법 제9조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제10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·약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

나.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
(보건의료정책과 '17.9.29)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본 동의안은,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 인 ‘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’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, 재위탁을 추진하기위하여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¹⁾은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음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‘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’ 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에 위치하여 장애인구강진료를 목적으로 2005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임.

1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〈장애인 치과병원 시설〉

| 층 별 | 용 도 | 면 적(m ²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의료시설 | 1,606.62 |
| 지하 1층 | 세미나실, 의료정보실 | 336.44 |
| 지상 1층 | 환자대기실, 전신마취실 | 219.08 |
| 지상 2층 | 진료실, 방사선실, 특수치료실 | 446.52 |
| 지상 3층 | 진료실, 연구실 | 447.46 |
| 지상 4층 | 행정실, 옥상 녹지화공원 | 157.12 |

〈장애인 치과병원의 민간위탁 주요연혁〉

| 일 자 | 연 혁 |
|-----------|--|
| 2005. 04. |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위·수탁 협약 체결 |
| 2005. 09. | 병원 개원 |
| 2008. 04. |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1차 위·수탁 협약 체결 (2008.4.18.~2011.4.17.) |
| 2011. 04. |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2차 위·수탁 협약 체결 (2011.4.18.~2014.4.17.) |
| 2014. 04. |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3차 위·수탁 협약 체결 (2014.4.18.~2015.4.17.) |
| 2015. 04. |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4차 위·수탁 협약 체결 (2015.4.18.~2018.4.17.) |

2 민간위탁 주요 성과

-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은 장애인 전담의 구강치료 전문기관으로 지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 주요사업의 목표대비 실적은 대부분 90%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. 목표대비 실적이 높은 것은 2015년의 이동치과사업 등으로 나타남. 또한 진료목표대비 실적이 낮아 진료수익도 목표대비 낮게 나타남.

〈장애인 치과병원 주요사업 실적과 달성률〉

| 연도 | 사업명 | 목표 | 실적 | 달성률(%)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2015 | 장애인 치과치료 | 환자수(명) | 24,945 | 22,255 | 89.2 |
| | | 수익(천원) | 4,425,030 | 3,773,723 | 85.3 |
| | 장애인이동 치과진료사업 | 환자수(명) | 14,910 | 13,398 | 89.9 |
| | | 횟수 | 215 | 242 | 112.6 |
| 2016 | 장애인 치과치료 | 환자수(명) | 25,693 | 22,018 | 85.7 |
| | | 수익(천원) | 4,446,013 | 3,896,616 | 87.6 |
| | 장애인이동 치과진료사업 | 환자수(명) | 15,000 | 13,571 | 90.5 |
| | | 횟수 | 270 | 252 | 93.3 |

- 건강보험 대상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을 확대(20%→30%)나 전신마취 사전검사 one-stop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과 공공성 확보 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실적은 낮게 나타남.
- 반면 외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(2016년), 2015, 2016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표창 등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사무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구강진료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높은 편임.

3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였

음.2) 또한 동조례 제6조3)에 따르면 시립병원 등 보건,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음.

- 위와 같은 이유로, 치과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하자요건은 없을 것으로 여겨짐.

- 다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성과가 제시된 것도 동 사무의 민간위탁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로서 작용된다 할 것임.

4 종합의견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,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.4)

2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3)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(생략)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(후략)

4) 그러나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미이행사안으로 동의안의 처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 존재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14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및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치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, 그동안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되고, 위·수탁 협약기간이 만료('18.4.17) 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
- 나. 치과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○ 추진 필요성

- 장애인 구강치료를 통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

- 전문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진료연계와 병원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능강화
-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,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
- 병원 및 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치과진료
-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
-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
- 시설규모 : 대지 836.6 m^2 , 건물 1,606.62 m^2 (지하1층, 지상4층)
- 지원시설 : 장애인 구강진료
- 개원일자 : 2005년 9월



마. 민간위탁기간

○ 2018년 4월 18일 ~ 2021년 4월 17일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총 2,514,246천원('18년 예산편성중)

○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| 사 업 별 | 2017년도 예산 | 2018년도 예산(안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 계 | 2,424,796 | 2,514,246 |
| 운영보조금 | 2,181,569 | 2,356,357 |
| 공공의료 손실보전 | 1,506,039 | 1,506,039 |
| 이동치과진료 | 380,042 | 422,169 |
| 치과치료비 지원 | 223,680 | 296,760 |
|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| 38,692 | 90,464 |
| 301네트워크 | 33,116 | 40,925 |
| 자본보조금 | 243,227 | 157,889 |
| 필수 의료장비 도입 | 138,810 | 80,960 |
| 행정사무실 증축공사 | - | 60,000 |
| 보안소프트웨어 구매 | - | 3,025 |
| 옥상난간보수 | - | 7,000 |
| 공기구 및 비품구입 | 37,437 | 6,904 |
| 노후서버 교체 | 21,980 | - |
| 진료실 창호 공사 | 25,000 | - |
| 이동차량 리프트 교체 | 20,000 | - |

※ 세부 산출근거 : 붙임 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장애인복지법 제9조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제10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·약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

나.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(보건의료정책과 '17.9.29)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강한석 (☎2133 - 7519)

- 산출근거

「운영보조금」

▶ 공공의료 손실보전

· 장애인치과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실률 산정

| 구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공의료 손실보전 | 1,590,736천원 (서울시 보조금 예산시스템 프로그램) | 1,506,039천원 (구조손실률 △87.36% 반영) | 1,506,039천원 (2016년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동결) | 1,506,039천원 (2017년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동결) |

※ 타 대학교치과병원 혹은 일반병원과 단순 비교하여 산정하는 경우 타당성이 없어 109.2%의 80%수준인 87.36%로 조정 재산정한 금액으로 반영

▶ 이동치과진료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계 | 보조금 | 산출 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진료재료비 | 53,500 | 24,000 | ■ 재료비 : 1,000 × 12월 × 차량2대 = 24,000 |
| | | 5,500 | ■ 진료 기구 (스켈러핸들, 패디랩판 등) : 5,500 |
| | | 24,000 | ■ 기공비 : 1,000 × 12월 × 차량2대 = 24,000 |
| 이동진료버스 및 내부 장비 수선유지비 | 51,600 | 16,800 | ■ 차량유지비 : 700 × 12월 × 차량2대 = 16,800 |
| | | 24,000 | ■ 차량유류대 : 1,000 × 12월 × 차량2대 = 24,000 |
| | | 4,800 | ■ 주차비 : 400 × 12월 × 차량1대 = 4,800 |
| | | 6,000 | ■ 차량내 의료장비 등 수선유지비 : 3,000 × 차량2대 = 6,000 |
| 이동치과진료 활동비 | 12,920 | 720 | ■ 전산프로그램 사용 및 유지보수비 : 60 × 12월 = 720 |
| | | 2,400 | ■ 이동진료용 소모품 : 100 × 12월 × 차량2대 = 2,400 |
| | | 4,800 | ■ 활동비 : 200 × 12월 × 차량2대 = 4,800 |
| | | 5,000 | ■ 지역사회 의료지원(장애인의날, 구강보건의날, 의료봉사): 1,000 × 5회 = 5,000 |
| 이동치과진료 전담 인건비 (퇴직금포함) | 304,149 | 146,722 | ■ 치과의사 : 8,733 × 12개월 × 3.5 ÷ 5 × 차량2대 = 146,722 |
| | | 89,562 | ■ 치과위생사 : 2,666 × 12개월 × 3.5 ÷ 5 × 2명 × 차량2대 = 89,562 |
| | | 22,848 | ■ 사회복지사 : 2,720 × 12개월 × 3.5 ÷ 5 = 22,848 |
| | | 45,018 | ■ 운전기사 : 2,680 × 12개월 × 3.5 ÷ 5 × 차량2대 = 45,017 |
| 합계 | 422,169 | - | - |

▶ **치과치료비 지원사업**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계 | 보조금 | 산출 내역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무료틀니·보철 지원사업 | 232,760 | 232,760 | ■ 틀니 및 지대치 지원 : 4,232 × 55명 = 232,760 |
| 임플란트 지원사업 | 64,000 | 64,000 | ■ 임플란트 지원 : 3,200 × 20명 = 64,000 |
| 합계 | 296,760 | | - |

▶ **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**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계 | 보조금 | 산출 내역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인건비 (퇴직금 포함) | 65,364 | 65,364 | ■ 치과위생사 : 2,514 × 13개월 × 2명 = 65,364 |
| 활동비 교육 사업 | 21,500 | 5,000 | ■ 교육도구 구매 (디스크로징 솔루션, 클레이토이, 자일리틀, 치아모빌 등) : 5,000 |
| | | 3,000 | ■ 교육용 소모품 (종이컵, 문구류, 현수막 등) : 3,000 |
| | | 12,000 | ■ 교육용 구강용품세트 : 4 × 3,000개 = 12,000 |
| | | 1,500 | ■ 연계기관과의 간담회비 : 300 × 5회 = 1,500 |
| 홍보비 | 3,600 | 1,500 | ■ 하얀별이 애드벌룬 제작 및 설치비 : 1,500 |
| | | 2,100 | ■ 리플렛, 포스터, 티셔츠 등 홍보물품 : 2,100 |
| 합계 | 90,464 | | - |

▶ **301네트워크 사업**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계 | 보조금 | 산출 내역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인건비 (퇴직금 포함) | 40,925 | 40,925 | ■ 치과위생사 : 2,214 × 13개월 = 32,682 ■ 사회복지사 : 3,148 × 13개월 = 40,925 |
| 운영비 | - | 2,000 | ■ 홍보물 제작 및 배포(리플렛 등) : 2,000 |
| | | 500 | ■ 기관방문 및 출장비 : 500 |
| | | 2,000 | ■ 협력기관 간담회비 : 200 × 10회 = 2,000 |
| | | 1,000 | ■ 활동비 : 1,000 |
| 의료비 | - | 20,000 | ■ 20명 × 1,000 = 20,000 |
| 계 | 40,925 | | - |

「자본보조금」

▶ 필수 의료장비 도입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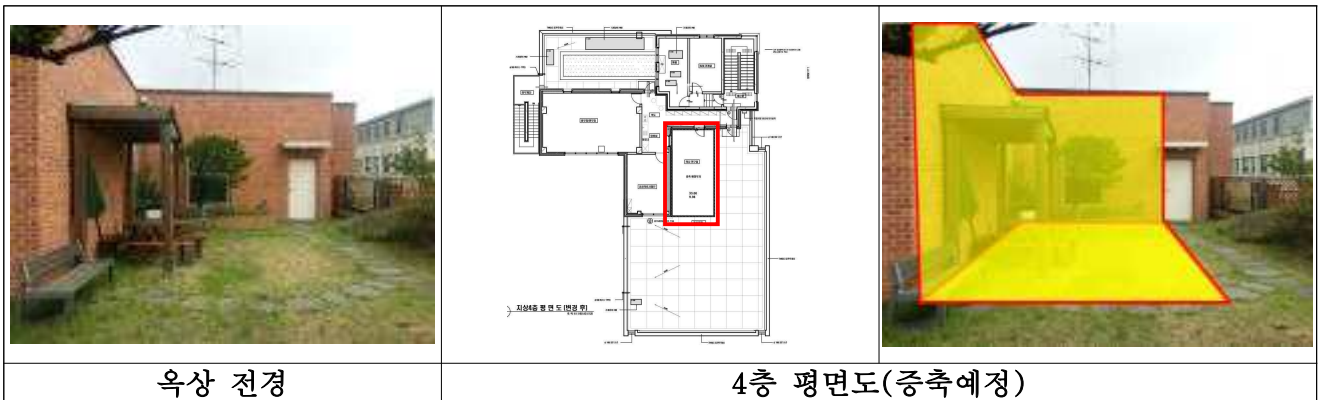
| 취득구분 | 의료장비명 | 수량 | 단가 |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교 체 | 유니트체어 | 3 | 18,000 | 54,000 |
| | Air 콤프레샤 | 2 | 4,000 | 8,000 |
| | 근관장 측정기 | 4 | 1,550 | 6,200 |
| 계(A) | | 9 | 23,550 | 68,200 |
| 보 강 | 수냉식 석션 | 1 | 2,200 | 2,200 |
| | 치주기구 전동 연마기 | 1 | 990 | 990 |
| | 큐레이펜 | 1 | 1,980 | 1,980 |
| 계(B) | | 3 | 5,170 | 5,170 |
| 신 규 | Nocospray | 2 | 3,795 | 7,590 |
| 계(C) | | 2 | 3,795 | 7,590 |
| 총 계(A+B+C) | | 22 | - | 80,960 |

▶ 행정사무실 증축공사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소요예산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사무실 증축공사 | 50,000 |
| 건축설계 | 4,500 |
| 구조검토비용 | 4,400 |
| 공사감리비용 | 1,100 |
| 합 계 | 60,000 |

※ 대상지 전경



▶ 보안소프트웨어 구매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계 | 보조금 | 산출 내역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안소프트웨어 | 3,025 | 3,025 | ■ 302.5천원 × 10조 = 3,025천원 |
| 계 | 3,025 | | - |

▶ 옥상난간보수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소요예산 |
|-------------|-------|
| 옥상 난간 보수 공사 | 7,000 |
| 합 계 | 7,000 |

※ 옥상 난간 사진



난간 부식, 비틀림, 갈라짐으로 안전의 위험성이 있음

▶ 공기구 및 비품구입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소요예산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행정실 PC, 모니터, 대기의자 등 | 6,904 |
| 합 계 | 6,904 |